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산업 경쟁력강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57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4
2. 총괄적 검토	5
3. 총칙(제1장)	7
4. 인공지능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제2장)	11
5. 인공지능신기술 연구사업의 추진·실증 및 확산 등(제3장)	21
6.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제4장)	37
7.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및 재정 지원(제5장)	4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6. 20.

다. 회 부 일 : 2025. 6.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합작하여 인공지능 인프라 등에 약 730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EU는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약 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효율적 알고리즘으로 딥시크 등 고성능 인공지능모델을 구현하여 인공지능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을 제정(2025년 1월)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에 관하여는 다소 부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공지능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인공지능신기술 연구사업의 추진·실증 및 확산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시범사업의 실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인공지능 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인공지능 청년인력 양성·활용, 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정보 협력, 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및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세 등에 관한 특례,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5개 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규정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4조(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제5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6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조성·운영 등 지원) 제3장 인공지능신기술 연구사업의 추진·실증 및 확산 등 제7조(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등) 제8조(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제9조(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조(기업공동연구소) 제4장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 제12조(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제14조(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 조사) 제15조(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제16조(인공지능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제17조(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제18조(인력양성사업 정보 협력) 제19조(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제5장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 제20조(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제2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2조(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제23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5조(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조세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고용보조금의 지급)
--	--

2. 총괄적 검토

-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등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흥·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 관련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신기술 지정 및 개발·사업화 지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인공지능 인력양성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에도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도입 지원,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간 정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인공지능기본법의 체계 보완, 일부개정 등을 통해 제정안의 취지를 담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입법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범국가적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체계 정합성 및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조문별 검토에서 논의함.

3. 총칙(제1장)

가.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업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및 “인공지능기술”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2) 제정안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을 말한다.
2.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말한다.
4.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이하 “인공지능사업자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업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및 ‘인공지능기술’의 의미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업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인공지능기술’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나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법체계적으로 합리적임.
- 다만,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를 정의할 때 ‘인공지능기술’을 사용하므로 체계상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정의가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보다 먼저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에 이 법보다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안 제3조 제1항).
-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름(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②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3) 검토사항

- 안 제3조 제1항 제정안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정함으로써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정의와 인공지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정안과 인공지능기본법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안 제3조 제1항 단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더 유리한 특례가 있다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하나의 대상에 대해 여러 법률에 특례가 산재하는 경우 수범자로서는 특례의 적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인공지능사업자의 “유불리” 여부에 따라 법률 적용 관할이 변경된다는 점은 법체계 및 적용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 등이 영향을 받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작물 등의 이용 및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4. 인공지능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제2장)

가.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안 제4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 계획(이하 “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제3항)

(2) 제정안 조문

제4조(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1년마다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전망
3.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전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전략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4조는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서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 기본계획의 내용에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진흥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

1)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고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법으로써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전략계획의 내용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략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따르거나 그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계획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4조 제1항 본문은 문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전략계획의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변경도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전략계획의 변경은 계획의 내용이 바뀔 필요가 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므로 해당 조문에서 변경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전략계획 변경 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는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²⁾에 전략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 등(안 제5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하여야 하고(안 제5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제2호)
 -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2) 제정안 조문

제5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역을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5조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 다만, 제정안은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조성 필요성 판단,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과정에서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는 그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

- 또한, 안 제5조 제2항 제1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을 지정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이므로 지정을 받는 대상이 지정과정에서 사위(詐僞)행위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를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산업의 특성상 전력수요가 많으므로 지역별 전력수급과 계통여건을 고려하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조성·운영 등 지원(안 제6조)

(1) 제정안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내 인공지능산업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1호)
 -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데이터센터, 초고성능컴퓨터 및 첨단그래픽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컴퓨팅 인프라에 관한 시설(제2호)
 -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제3호)
 - 그 밖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입주한 인공지능사업자등 (이하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입주자)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및 제4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서의 산업기반시설 설치·운영, 편의시설 설치, 설비투자 및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제5항).

(2) 제정안 조문

제6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조성·운영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데이터센터, 초고성능컴퓨터 및 첨단그래픽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컴퓨팅 인프라에 관한 시설
3.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4. 그 밖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입주한 인공지능사업자등(이하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입주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2. 부지의 조성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 복귀기업의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내 설비투자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8. 그 밖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고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검토사항

- 안 제6조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여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클러스터 입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국내 전력망 확충이 지연³⁾되면서 조성된 클러스터로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설비나 첨단그래픽장치 등의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산업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상 주요 사업 31건 중 12건 지연

- 교육부는 안 제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교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때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5. 인공지능신기술 연구사업의 추진·실증 및 확산 등(제3장)

가. 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등(안 제7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기술이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인공지능산업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술을 인공지능신기술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7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된 인공지능신기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제1호)
 - 해당 인공지능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공지능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제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 관련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을 개발한 인공지능사업자등이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경우 시설 및 인프라의 우선 사용,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5항)

(2) 제정안 조문

제7조(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기술이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인공지능산업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인공지능기술(이하 “인공지능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공지능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인공지능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공지능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기술 관련 테스트베드(인공지능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제품·인공지능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을 개발한 인공지능사업자등이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경우 시설 및 인프라의 우선 사용,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7조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혁신을 위하여 인공지능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신기술을 개발한 인공지능사업자등을 우대함으로써,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되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여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선도국가와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다만, 제정안은 인공지능신기술 지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의 신규성·진보성과 인공지능산업에서의 활용 필요성 등을 판단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지정 여부 결정에 재량권이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신기술 지정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선정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⁵⁾ 등은 재량사항으로 규정됨.

4)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5)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또한, 안 제7조 제2항 제1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신기술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을 지정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이므로 지정을 받는 대상이 지정 과정에서 사위(詐僞)행위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를 인공지능신기술 지정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인공지능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은 교육부, 고용부, 산업부, 기재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신기술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주체는 정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상 조세제도의 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므로 안 제7조제3항과 같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신기술에 대한 법률상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인공지능신기술 지정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기업의 기술을 신기술로 지원하는 경우 오히려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인 국내 스타트업의 후속 기술 개발 및 시장 확산,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안 제8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의 수행 시 공모 외의 방법으로 인공지능전략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8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인공지능전략과제로서 인공지능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5항).

(2) 제정안 조문

제8조(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인공지능전략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인공지능전략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인공지능전략과제로서 인공지능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8조는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사업을 인공지능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 ① 공모 외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 선정,
 - ② 최종평가 우수연구과제의 추가적 지원,
 - ③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현금부담비율 등 완화,
 - ④ 중앙행정기관 납부 기술료 감면,
 - ⑤ 특정평가 실시 시 자체평가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다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안 제8조와 동일한 특례 제도를 도입⁶⁾하면서 국가전략기술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⁷⁾을 규정하고 있음.

6)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설비구축, 정보의 유출 예방 등에 필요한

- 그런데, 12대 국가전략기술⁸⁾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나 인공지능신기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분야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나 연구기관은 같은 특례를 부여받으면서 기술보호·보안에 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공지능신기술로 지정받는 것을 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 즉, 국가전략기술의 요건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이 인공지능신기술로 지정되면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인공지능신기술에서 제외하는 등 두 기술분류의 명확한 구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육성주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12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임.

다.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안 제9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인공지능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확산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9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 정부는 인공지능신기술 제품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신기술 적용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신기술 적용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항 및 제6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7항)
- 특허청장은 인공지능전략사업 결과물에 대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제9항).
 -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허출원 우선심사(제1호)
 -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제2호)
 -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제3호)

(2) 제정안 조문

제9조(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정부는 인공지능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확산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신기술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인공지능전략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인공지능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신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제공
2. 인공지능신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3. 인공지능전략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신기술에 관한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5. 인공지능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6. 그 밖에 인공지능전략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⑨ 특허청장은 인공지능전략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허출원 우선심사
2.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거래·사업화 촉진 지원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⑩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공지능신기술과 인공지능전략사업의 결과물이 사업화되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9조 제2항에서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직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 유입이 활발하지 않고 사업화가 어려운 혁신성 있는 기술에 대해 정책자금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확대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재간접펀드로,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털의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함.
- 다만, 이미 ‘2025 AI 코리아 펀드’와 같은 대규모 정책펀드가 조성⁹⁾되어 인공지능 분야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자금 지원의 중복 여부, 여러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의 출자 대상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모태펀드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안 제9조 제2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9) ‘2025 AI 코리아 펀드’는 한국산업은행이 2024년부터 3년간 조성 중인 AI 코리아 펀드의 2차년도 사업으로, 한국산업은행 출자금 1,500억원을 마중물로 총 5,0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임.

라. 기업공동연구소(안 제11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신속한 육성·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제1항).
-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음(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인공지능기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정안 조문

제11조(기업공동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신속한 육성·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인공지능기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1조는 인공지능신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므로, 안 제11조 제2항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기관 등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같은 조 제3호는 중견·중소기업 외에 인공지능기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인공지능사업자면 기업 공동연구소 설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해당 요건을 정할 때 대기업이 보유한 원천기술의 사업화가 시급한 경우이거나 중견·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대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이와 유사하게,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¹⁰⁾ 및 그 관계 법령¹¹⁾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추가로, 안 제11조 제2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의 문언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3호도 ‘인공지능기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수정이 필요함.

10)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1)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 교육부는 안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지원대상에 학교가 포함되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보조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가 필요¹²⁾하므로, 학교에 대한 지원 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12)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제4장)

가.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안 제12조)

(1) 제정안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연구인력 육성과 안정적인 연구 및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의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단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5항 및 제6항).

(2) 제정안 조문

제12조(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력의 육성과 양성을 위하여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이 인공지능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3.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4.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2조는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 분야 인력은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인재가 오히려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인력확보 문제가 시급한 상황임.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집계됨.
- 따라서, 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이나 인력양성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 등 적극적인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양성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임.

- 교육부는 안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원 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의 학생 또는 교직원 등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안 제13조부터 제18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안 제13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산업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
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제2항).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 및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지역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청년인력의 활용 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인력의 양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사업 간 중복 제거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함
(안 제18조).

(2) 제정안 조문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산업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지역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공지능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청년인력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인력의 양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인공지능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인공지능산업 내 청년인력에 대한 우대 촉진

4. 인공지능산업 분야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인력양성사업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력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제13조에 따른 해외인력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력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3조부터 제18조는 인공지능산업 인력과 관련하여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지원, 인력 수급동향조사, 지역인력 확보, 청년인력 양성 및 활용, 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사업 추진 주체 간 정보 협력 등 다방면의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산업 인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력 교류, 지방 인력의 수급 균형, 미래 세대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질적 확대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3조부터 제18조의 내용은 이미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이 첨단산업에 포함¹³⁾되므로, 관련 규정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제정안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비교¹⁴⁾>

제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제26조(해외인재 적정유치 규모 검토 등)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제14조(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제19조(인력수급분석)
제15조(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16조(인공지능 청년 인력의 양성·활용)	제23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제17조(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제24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18조(인력양성사업 정보 협력)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력양성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 제18조에 따른 정보 협력의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고 협력이 아닌 협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13)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

[별표] 첨단산업(법 제2조제1호다목 관련)

① 인공지능 산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14)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의견을 정리한 것임.

다. 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안 제19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 및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해 금융상의 지원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2) 제정안 조문

제19조(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인력양성 및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전문양성인(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채용 실적,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9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인력을 양성하거나 채용한 기업과 전문양성인에게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인공지능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도록 경제적인 유인 구조를 설계 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19조 제1항에서 전문양성인을 정의하면서 사실상 전문 양성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용어의 정의와 행정행위의 근거를 혼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양성인 등록의 권한 주체, 요건, 절차 등에 대해서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참고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전문 양성인의 등록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¹⁵⁾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안 제19조에 따른 우수 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기간 인력 지원사업 추진 및 우수기업 선정 경험이 있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문양성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수정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함.

15) 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7.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및 재정 지원(제5장)

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안 제20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0조 제1항).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3항).

(2) 제정안 조문

제20조(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0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전력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산업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고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활용할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제를 적용¹⁶⁾하는 전기요금의 특성상 특정 대상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은 다른 전기사용자의 요금 부담 증가 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전기요금 감면 제도는 대부분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목적¹⁷⁾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규정한 입법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전기요금 감면¹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한국

16) 제11조(요금수준) ①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17)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자녀이상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임.

18)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숙사 전기요금 감면¹⁹⁾²⁰⁾ 등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감면은 다른 소비자에 대한 요금 인상 형태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예산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19)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0)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 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안 제22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하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22조).

(2) 제정안 조문

제22조(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하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미리 그 결과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²¹⁾.

21)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협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안 제22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건축·설치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력계통영향평가로 인한 데이터센터 건설의 지연이나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다만,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계통의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신규 전력수요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 대상 및 완화 정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안 제23조)

(1) 제정안 요지

- 비수도권 시·도지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함(안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음(제4항).
 - 전력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등)(제1호)
 -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등)(제2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시설(제3호)
 - 공원 및 공동구(제4호)
 -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5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6항)

(2) 제정안 조문

제23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사업자의 투자계획, 데이터센터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시설
4. 공원 및 공동구
5.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3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특구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23조 제1항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특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여²²⁾, 비수도권에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반적으로 특구 지정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의 밀집에 따른 집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측면도 있는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밀집에 따른 집적 이익의 창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2) 2024년 기준 민간 데이터센터 92개 중 68개(73.9%)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 일반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자와 데이터센터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데이터 전송 지연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데이터센터 간 거리보다는 실수요자와의 거리가 중요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데이터센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센터가 다량의 전력을 소모함에 따라 관련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안 제23조 제6항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²³⁾,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와 맞지 않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각종 특구 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간 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제정안에서 도입하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이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까지 신설하는 것은 특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예외적 혜택 부여를 통한 선택과 집중 효과 창출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23)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 환경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필요한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비용 지원은 국가산단 용수공급 시설 설치시 국가 지원비율(국고출자 30%)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도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안 제25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안 제25조).

(2) 제정안 조문

제25조(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5.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6.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차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2.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컴퓨팅 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인공지능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7. 인공지능산업 육성 전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8.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0.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5조는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과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것임.
- 다만, 통상적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① 조세수입, ② 부담금, ③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④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⑤ 융자금의 원리금, ⑥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⑦ 출연금, ⑧ 과징금·가산금·부과금, ⑨ 수수료, ⑩ 차입금, ⑪ 재산의 매각대금 및 운용수입, ⑫ 기타 수입금 등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된다는 점에서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경우 전입의 사유를 법률에 별도로 명시²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²⁵⁾, 제정안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지출로 세출이 아닌 세입의 감소에 해당하여 특별회계 세출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안 제25조 제3항 제5호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4)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25)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라. 조세 등에 관한 특례(안 제26조)

(1) 제정안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안 제26조 제1항),
인공지능산업의 연구개발·인력양성 비용, 인공지능산업의 사업화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금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26조(조세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인공지능산업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6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비용·투자금에 대한 공제를 통해 인공지능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법상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²⁶⁾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²⁷⁾ 등 조세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세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규정을 둘 실익도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6)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각호생략)

27)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마. 고용보조금의 지급(안 제27조)

(1) 제정안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안 제27조).

(2) 제정안 조문

제27조(고용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27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고용을 촉진하고 해당 인력의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조례는 지자체가 정하는 규범으로 그 적용범위는 해당 지자체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위규범인 법률에서 국가가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2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급 주체에서 국가를 제외하거나

국가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0

※참고: 2024년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현황(출처: 한국데이터
센터연합회)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1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IT센터	부산 강서구
2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송도 IDC	인천 연수구
3	DB Inc	DB죽전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4	DGB금융그룹	DGB혁신센터	대구 동구
5	Digital Realty	ICN10	서울 마포구
6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서울 중구
7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파이낸스	경기 용인시
8	JB금융	광주은행본점센터	광주 동구
9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염창센터	서울 강서구
10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	경기 김포시
11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여의도센터	서울 영등포구
12	KINX	케이아이엔엑스 도곡센터	서울 강남구
13	KT Cloud	KT청주(분평)IDC	충북 청주시
14	KT Cloud	KT대전(탄방)IDC	대전 서구
15	KT Cloud	KT목동1IDC	서울 양천구
16	KT Cloud	KT강남IDC	서울 강남구
17	KT Cloud	KT여의도IDC	서울 영등포구
18	KT Cloud	KT천안CDC	충남 천안시
19	KT Cloud	KT분당IDC	경기 성남시
20	KT Cloud	KT목동2IDC	서울 양천구
21	KT Cloud	KT용산IDC	서울 용산구
22	KT Cloud	KT부산송정 GHC	부산 해운대구
23	KT GDH	KT GDH	경남 김해시
24	LG CNS	상암IT센터	서울 마포구
25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산 강서구
26	LG CNS	LG CNS 인천센터	인천 계양구
27	LG CNS	LG CNS 가산센터	서울 금천구
28	LG유플러스	LG U+ 서초1 IDC	서울 서초구
29	LG유플러스	LG U+ 서초2 IDC	서울 서초구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30	LG유플러스	LG U+ 대구IDC센터	대구 중구
31	LG유플러스	LG U+ 가산IDC	서울 금천구
32	LG유플러스	LG U+ 상암IDC	서울 마포구
33	LG유플러스	LG U+ 논현IDC	서울 강남구
34	LG유플러스	LG U+ 평촌메가센터	경기 안양시
35	Microsoft	MS KOREA	부산 강서구
36	NH 금융그룹	NH통합IT센터	경기 의왕시
37	NH 금융그룹	농협정보기술연구원	경기 안성시
38	NHN 클라우드	NHNC	경기 성남시
39	NICE홀딩스	나이스데이터센터	서울 강동구
40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서초센터	서울 서초구
41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42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분당센터	경기 성남시
43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가산IDC	서울 금천구
44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일산2IDC	경기 고양시
45	SK주) C&C	SK C&C 대덕데이터센터	대전 유성구
46	SK주) C&C	SK C&C 판교데이터센터	경기 성남시
47	SK텔레콤	성수국사	서울 성동구
48	SK텔레콤	대덕국사	대전 서구
49	교보정보통신구 교보-IBM	교보데이터센터	인천 연수구
50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춘천	강원 춘천시
51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세종	세종 집현동
52	농협정보시스템	농협정보시스템 여의도 IDC센터	서울 영등포구
53	다우기술	다우IDC마포센터	서울 마포구
54	대상정보기술	대상그룹 전산센터	서울 중랑구
55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D-클라우드센터	강원 춘천시
56	드림마크원드림라인	드림마크원 구로IDC	서울 구로구
57	롯데 이노베이트	제1센터 서울센터	서울 금천구
58	롯데 이노베이트	롯데정보통신 용인 정보기술연구소	경기 용인시
59	롯데 이노베이트	마북4센터	경기 용인시
60	삼성SDS	삼성SDS 수원데이터센터	경기 수원시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61	삼성SDS	삼성SDS 구미데이터센터	경북 구미시
62	삼성SDS	삼성SDS 상암데이터센터	서울 마포구
63	삼성SDS	삼성SDS 춘천 데이터센터	강원 춘천시
64	삼성SDS	삼성SDS 동탄 데이터센터	경기 화성시
65	세종네트웍스	분당센터	경기 용인시
66	수협중앙회	데이터센터	서울 송파구
67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 데이터센터	경기 김포시
68	신한은행데이터센터	신한은행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69	신한은행재해복구센터	신한은행 재해복구센터	경기 고양시
70	싸이버원	싸이버원 IDC	서울 동작구
71	아시아나DT	아시아나데이터센터	서울 강서구
72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FIS 상암센터	서울 마포구
73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서울 강남구
74	케이엘넷	IDC센터	서울 강남구
75	코스콤	코스콤 여의도 DC	서울 영등포구
76	코스콤	코스콤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77	포스코DX	포스코 포항데이터센터	경북 포항시
78	포스코DX	포스코 충주데이터센터	충북 충주시
79	포스코DX	포스코 광양데이터센터	전남 광양시
80	하나금융티아이	통합데이터센터	인천 서구
81	한화시스템	한화그룹통합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82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파주데이터센터	경기 파주시
83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광주 광산구
84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의왕 데이터센터	경기 의왕시
85	호스트웨이아이디씨	호스트웨이IDC	경기 성남시
86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IDC센터	서울 종로구
87	신테카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대전 유성구
88	NHN클라우드	국가AI데이터센터	광주 북구
89	KINX	과천데이터센터	경기 과천시
90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경기 안양시
91	드림마크원	인천데이터센터	인천 가좌동
92	에퀴닉스	SL2x	경기 고양시